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09

발의연월일 : 2026년 1월 일

발 의 자 : 정혜영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 유형 중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합리적으로 감액하거나, 회의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1]된 하남시의회 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신설(안 제6조)

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함[별표 1]

○ 월정수당 :월 2,608,380원 → 월 2,654,030원

---

1) 정책기획관-193046(“하남시의회의원 2023년~2026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알림“, 2022. 11.11.)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하남시의회 조례 제　　호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1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생 략) <신 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

	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지 급 금 액	비 고
의회의원	**월 2,654,030원**	